

지방투자사업관리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설립 배경

- 지방자치제도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재정투자의 효율성과 책임성을 제고시키려는 노력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방투자사업 관리제도가 시행됨
- 1994년 「지방재정법」과 1995년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투자심사 결과에 따라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의무규정을 도입하였고, 2005년 동법 제37조 제2항을 개정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함(「지방재정법시행령」 제41조, 제43조, 제44조('05.12.30. 전부개정)(행정안전부,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2017))
- 다만 사업의 시행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타당성 조사를 자체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조사결과와 객관성과 신뢰성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는 등 제도개선이 요구되어, 2014년 동법 동 조항을 개정하여,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하도록 함
 - * 2012년 감사원에서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와 타당성 조사에 대한 감사가 수행되었고, 그 결과 감사원은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를 위한 용역기관을 직접 선정하여 그 결과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상실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함(감사원 감사연구원, 2012.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실태분석」, p37)
- 이러한 배경 하에 행정안전부는 전문성,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 독립된 타당성 조사 전문기관으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이하 '본 센터')를 2014년 12월에 지정·고시함

센터를 중심으로 본 지방투자사업관리의 현황

- 센터 개소 후 2015년부터 3년간 본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의 현황은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조사 건수는 총 96건(수행 중 포함)임. 2015년 16건에서 2017년 48건으로 연평균 173%의 증가추세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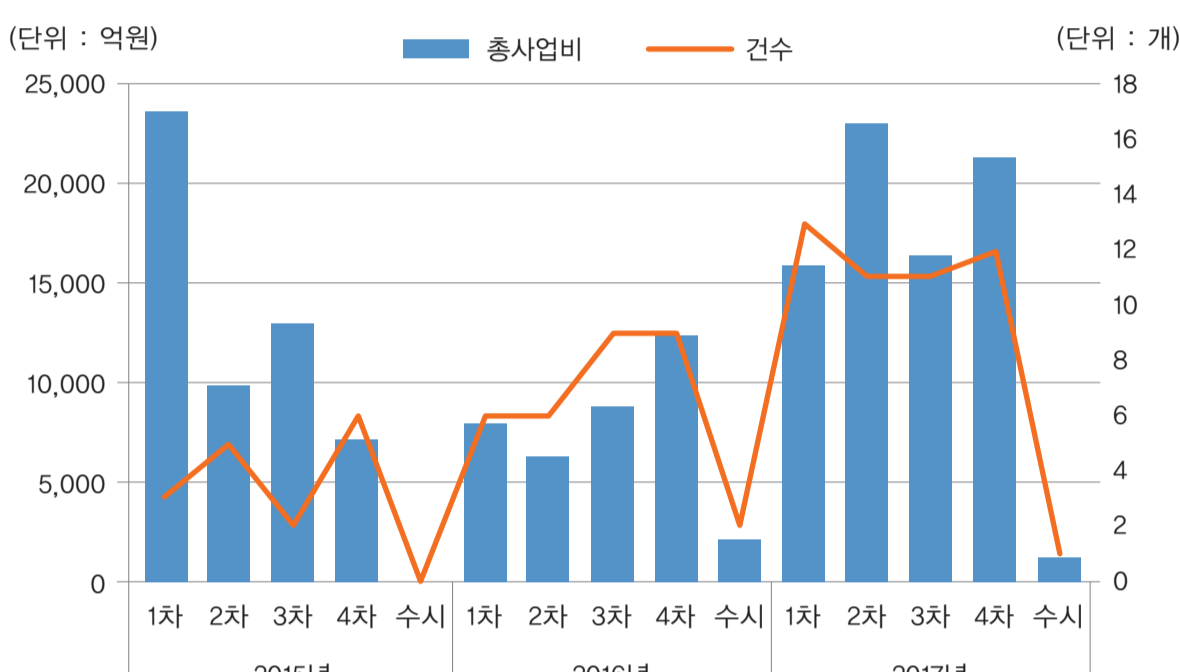
[표 1] 타당성 조사 수행건수 및 총사업비

(단위 : 억원)

연도	구분	1차	2차	3차	4차	수시	소계
		2015년	3건	5건	2건	6건	-
	총사업비	23,623	9,849	12,968	7,097	-	53,537
2016년	건수	6건	6건	9건	9건	2건	32건
	총사업비	7,943	6,279	8,709	12,329	2,089	37,349
2017년	건수	13건	11건	11건	12건	1건	48건
	총사업비	15,877	23,012	16,359	21,290	1,153	77,691
총계	건수						96건
	총사업비						19조4,778억원

주 : 1) 2018년 5월말 기준으로 작성됨. 철회, 해지된 사업은 건수 산정시 제외함
2) 총사업비는 조사의뢰서 기준임

자료 : 내부자료



연도별 조사건수 및 총사업비

- 본 센터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이후, 의뢰대비 수행건수 비율은 2015년 49%에 불과했지만 2017년에는 67%에 달하고 있음
 - 의뢰대비 수행건수 비율 : 의뢰대비 수행건수 비율은 의뢰한 사업 중에서 타당성 조사를 수행한 비율을 의미함. 「지방재정법」에 의한 타당성 조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안전부로 조사를 의뢰하고, 사업설명회 및 사업선정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 수행여부가 결정됨. 즉, 의뢰한 사업 중에서 타당성조사 착수가 어려운 사업은 반려하거나 의뢰기관에서 철회함.
- 수행건수 비율의 증가는 행정안전부와 본 센터가 주관하는 교육과 정책홍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에 대한 제도적 이해가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볼 수 있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성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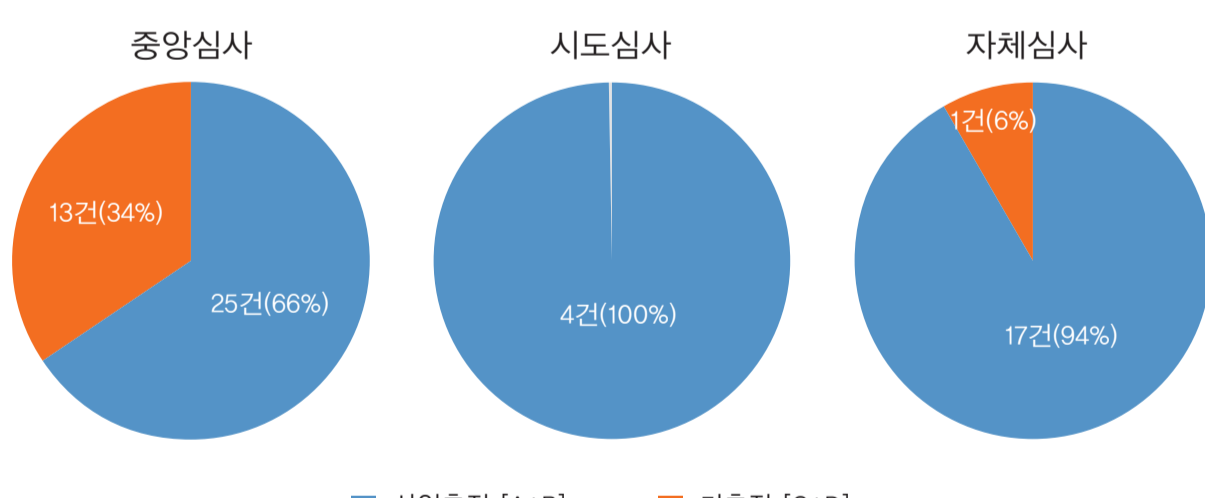
- 「지방재정법」에 의해 투자심사를 위한 사전절차로서 타당성 조사가 실시되며, 투자심사에서 사업의 시행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고 있음.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중앙투자심사(지방자치단체에서 투자사업 심사를 행정안전부에 의뢰, 이하 중앙심사), 시·도투자심사(시·군·구에서 투자사업 심사를 시·도로 의뢰, 이하 시도심사) 및 자체투자심사(시·도 및 시·군·구의 자체사업 심사, 이하 자체심사)로 구분하고 있음
- 2015년부터 2017년동안 수행한 타당성 조사건수는 총 96건이고, 이 중에서 60건이 투자심사를 완료함. 투자 심사 결과는 중앙심사가 38건(63.3%)으로 가장 많고, 자체심사 18건(30.0%), 시·도심사 4건(6.7%)임
- 투자심사를 수행한 총 60건 중에서 투자 심사결과는 조건부가 33건(55.0%)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적정과 재검토가 각각 13건(21.7%)이며, 부적정은 1건(1.7%)임

[표 2] 투자심사 결과(총 60건)

(단위 : 건, %)

심사대상	투심대상 [A+B+C+D]	사업추진 [A+B]		미추진 [C+D]		부적정[D]
		적정[A]	조건부[B]	적정[A]	조건부[B]	
중앙심사 (지자체사업 → 중앙심사)	38 (63.3%)	25 (65.8%)	2 (5.3%)	23 (60.5%)	13 (34.2%)	1 (2.6%)
시·도심사 (시·군·구사업 → 시·도심사)	4 (6.7%)	4 (100%)	1 (25.0%)	3 (75.0%)	- (0%)	- (0%)
자체심사 (시·도, 시·군·구 자체사업 심사)	18 (30.0%)	17 (94.4%)	10 (55.6%)	7 (38.9%)	1 (5.6%)	1 (5.6%)
합계	60 (100%)	46 (76.7%)	13 (21.7%)	33 (55.0%)	14 (23.3%)	1 (1.7%)

주 : 총 63건이나, 투자심사 제외 2건, 사업취소 1건을 제외한 60건으로 제시함



심사기관별 투자심사 결과(총 60건)

- 투자 심사결과에서 적정과 조건부로 판정 받은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반면에 재검토와 부적정은 사업시행이 어려움
- 본 센터에서 수행한 타당성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비율은 23.3%이며, 사업 미추진으로 불필요한 재정투자로 판명되어 절감된 지방재정소요(총사업비는 지난 3년간 4조 2,602억원(총 60건의 총사업비 10조 6,669억원의 약 40%)으로, 연평균 1조 4천억원 이상의 재정 절감효과가 나타나고 있음
- 이는 [표 2]에서 행정안전부의 중앙심사가 아닌 시·도 및 자체심사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심사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업이 추진된다는 사실과 대조됨
- 지방자치단체가 타당성 조사와 투자심사를 직접 진행하는 경우보다 본 센터의 타당성 조사 및 중앙심사를 수행하는 것이 불필요한 재정소요를 절감하는 데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음
- 따라서 본 센터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지방투자사업 관리체계는 국정기조인 자치분권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강화와 재정 건전성 확보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음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의 향후 역할과 방향

- 본 센터의 타당성 조사 수행건수는 연평균 173%씩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민선 7기의 출범은 '4.27 판문점 선언' 등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간 협력사업 및 북한지역 투자사업에 대한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의 신규 투자사업이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보임
- 또한 지방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및 투자심사 등 사전적인 관리를 넘어, 사업의 진행상황과 지속적인 성과를 환류하는 투자사업 이력관리를 본 센터에서 추진함. 이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사업에 대한 생애주기적 관리(life-cycle management) 체계를 구축하고 재정소요의 전방위적인 관리 역할이 확장되도록 전망됨
- 따라서 지방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 대한 수요와 지방재정의 관리체계에 있어서 본 센터의 역할은 꾸준히 증가하고 확대될 전망이다. 더불어서 자치분권의 실현을 위한 지방재정 독립성 강화 및 책임성 확보를 위한 역할이 더욱 부각될 것임
- 향후 중앙부처, 연구기관 및 시·도 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국내·외 유관기관과 적극적인 연계·협력을 통해서 타당성 조사와 투자사업 관리를 위한 방법론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필요가 있음. 이를 통해서 지방투자사업 관리 및 지방재정 강화를 위한 앵커기관으로서 전략적 자리매김이 요구됨

▶ 내용문의 : 전대욱(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석연구원, dujeon@krlia.re.kr, 02-3488-7375)

김기민(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문위원, kmkim@krlia.re.kr, 02-3488-5711)

자번호 보기 : 지방재정 장기전망과 지자체 대응전략(여효성 수석연구원) 원문보기

본 메일의 수신을 원하지 않을 경우 brief@krlia.re.kr로 회신해주시기 바랍니다.